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4
----------	-----

2024. 4. 2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4. 4. / 이수련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24.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4.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해설사 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 사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문화 예술 소양 계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 용어 정의(안 제2조)
 - “전시해설사” 정의 추가
-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각종 전시관의 진흥을 위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문화예술 이해도를 높여주는 ‘전시해설사’를 모집·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시공간의 맞춤형 해설로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감각적인 감상 체험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도슨트)의 활용을 통해 관내 각종 전시관 이용률 제고와 함께 전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